

Palos Verdes Peninsula Transit Authority (PVPTA)

공민권법 제 6 장 고소 양식

PVPTA 은은 개정된 1964 년의 공민권법 제 6 장에 의거해 어느 누구도 인종, 피부색 또는 출신국으로 인해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제외되거나 서비스 혜택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. 공민권법 제 6 장 고소는 반드시 주장되는 차별 대우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.

다음은 귀하의 고소 제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 정보입니다. 본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고소를 제기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, 310-544-7108 으로 고객 논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본사와 대중교통통 상 을을 방문하십시오. 작성된 본 양식을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.

Ms. Beatrice Hayden, Office Manager, P.O. Box 2656, Palos Verdes Peninsula, CA 90274,

귀하의 성명:	전화번호:
주소:	다른 전화번호:
시, 주, 우편번호:	
차별 대우를 당한 사람 (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): 성명(들):	
주소:	전화번호:
사건 발생일:	버스 번호/노선/장소 (해당되는 경우)

뒷면에 계속...

다음 중 차별 대우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? (하나만 표시)

- 인종
- 피부색
- 출신국(제한된 영어 사용 능력)

주장되는 차별 대우의 발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. 가능한 경우, 관련된 모든 PVPTA 담당자들의 이름 및 직책을 기재하십시오.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,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십시오. 더 이상의 지면이 필요하신 경우, 추가적인 본 양식의 용지를 이용하십시오.

그 동안 다른 연방정부, 주정부 또는 지역 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십니까? 예 아니오

“예”인 경우, 그 기관/기관들 및 연락처 정보를 다음에 기재하십시오:

기관/기관들:	연락담당자 성명:
주소:	전화번호:

본인은 상기 기소를 읽었으며 그 내용이 본인 최선의 지식,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한 진실임을 단언합니다.

서명: _____ 일자: _____